#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29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 이만희 · 강명구 · 김정재

고동진 • 정희용 • 엄태영

최은석 • 이양수 • 유상범

조은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 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 2.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

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은 20만원 × 11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아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 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치단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 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 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소지역은 제외한다)-----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 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u>설></u> 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 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_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 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신 설>

②·③ (생 략)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 10분의 100

- 2.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 100분의 15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은 20만원 × 110분의 100을 초과할수 없다.
-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